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소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0
----------	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9일

발 의 자: 이소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강석주, 경기문, 김규남, 김기덕, 김동욱, 김성준, 김영옥, 김용일, 김원중, 김인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 도문열, 문성호, 박강산, 박 석, 박수빈, 박승진, 박영한, 박유진, 박칠성, 박환희, 봉양순, 서상열, 서준오, 소영철, 송경택, 송도호, 아이수루, 유만희, 유정인, 윤영희, 이민옥, 이병도, 이상욱, 이상훈, 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 이희원, 임규호, 임종국, 전병주, 정준호, 정지웅, 정진술, 채수지, 최기찬, 최민규, 최재란, 한 신, 홍국표, 황유정 의원(56명)

1. 제안이유

-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쳐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, 신체적·정신적 문제로도 연결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음.

- 그러나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대부분 학업, 생계, 진로에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거나, 기존의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자임에도 행정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, 개인 사정을 노출하기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은 쉽지 않은 상황임.
- 이에 가족돌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가족돌봄청년의 정의를 규정함.(안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.(안 제4조)
- 라.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5조)
- 마.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6조)
- 바.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7조)
- 사. 민간전문가 활용 근거를 규정함.(안 제8조)
- 아.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 근거를 규정함.(안 제9조)
- 자. 중복지원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10조)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가족돌봄청년”이란 장애,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조직, 인력,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

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에 관한 사항
3.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법·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4.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
5.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 등)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
2.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·정서 지원사업
3.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
4.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·체육활동 지원사업
5.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
6.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② 시장은 자치구,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,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민간전문가 활용)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·법인·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.

제9조(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) 시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,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0조(중복지원의 제한)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